

「엘루크 방배 서리풀」 입주자 모집공고문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엘루크 방배 서리풀의 건본주택 방문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엘루크 방배 서리풀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llewk-bangbaeseoripul.co.kr>)
- 건본주택 방문은 엘루크 방배 서리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하신 분에 한정하여 건본주택 방문가능기간(별도공지)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예약은 엘루크 방배 서리풀 (<http://llewk-bangbaeseoripul.co.kr>)의 방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시 아래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제한 및 귀가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및 건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 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비접촉체온계 운영)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의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등 건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시행위탁자가 고지한 해당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건본주택 입장이 불가합니다.
- 서류 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건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청약자 혹은 당첨 및 계약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코로나 19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건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엘루크 방배 서리풀은 상담전화(02-3448-0208)등을 통해 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상담을 진행 하고 있으나 간혹 개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 및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본주택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본주택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건축물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 12. 30. 임. 아시아경제신문에 입주자모집공고 게재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최초 분양 이후 일부 잔여세대에 대한 2차 분양으로 이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06. 07. 임.
- 본 건축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서초구청 건축과 -42397(2021.12.29.)]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본 도시형생활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9호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 제1항,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함.
- 본 건축물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제57조 등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음.
- 청약자격: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당첨자 대상으로 정당계약 진행 시 필히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 ※ 세액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10억원 초과 - 350,000원
 - ※ 가산세 : 최대 300% 부과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 '21.1.1부터 적용)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서초구청 - 건축과 - 42397(2021.12.29.)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서초구청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승인(변경)완료.
- 분양사업자(시행수탁사 및 사업주체) : (주)무궁화신탁 - (110111-2867418)
- 시공사 : 더효종합건설(주) - (110111-6152758)
- 시행위탁사 : (주)제이앤유개발 - (110111-6927424) / (주)조이컨설팅 - (110111-6926814) / (주)비와이디산업개발 - (110111-6396356)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1-22,24,25번지
- 대지면적 : 1,687.10㎡
- 연면적 및 용도 : 7,692.347㎡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 공급규모 : 지하3층~지상13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60세대 중 19세대
- 주차대수 : 76대 (자주식 주차 : 50대, 기계식주차 : 26대)
- 준공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 (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 방문일 : 2023년 9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층별 용도 :

구분	용도
지하1층~지하3층	주차장, 부속시설, 부대시설 등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 지상 13층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공급대상

(단위: ㎡, 세대)

타입	군별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계단실	부속시설	소계		계단실	부속시설	주차시설	합계		
A	1군	10	48.160	11.922	0.092	12.014	60.174	2.450	10.304	39.920	52.674	112.848	24.263
B		4	48.170	11.924	0.091	12.015	60.185	2.451	10.306	39.928	52.685	112.870	24.368
C		3	47.990	11.880	0.090	11.970	59.960	2.442	10.267	39.779	52.488	112.448	24.177
D	2군	2	32.383	8.015	0.061	8.076	40.459	1.648	6.927	26.843	35.418	75.877	16.315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공급금액

(단위: m², 원)

군별	타입	세대수	호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	잔금(85%)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2023-11-01
1군	A	2	302,303	1,005,712,750	409,787,250	1,415,500,000	141,550,000	70,775,000	1,203,175,000
		2	402,403	1,012,817,750	412,682,250	1,425,500,000	142,550,000	71,275,000	1,211,675,000
		3	503,601,702	1,030,580,250	419,919,750	1,450,500,000	145,050,000	72,525,000	1,232,925,000
		3	1003,1202,1303	1,048,342,750	427,157,250	1,475,500,000	147,550,000	73,775,000	1,254,175,000
	B	1	305	1,034,132,750	421,367,250	1,455,500,000	145,550,000	72,775,000	1,237,175,000
		1	405	1,041,237,750	424,262,250	1,465,500,000	146,550,000	73,275,000	1,245,675,000
		2	505,605	1,048,342,750	427,157,250	1,475,500,000	147,550,000	73,775,000	1,254,175,000
	C	1	805	1,030,580,250	419,919,750	1,450,500,000	145,050,000	72,525,000	1,232,925,000
		2	1005,1105	1,048,342,750	427,157,250	1,475,500,000	147,550,000	73,775,000	1,254,175,000
2군	D	1	404	649,325,950	264,574,050	913,900,000	91,390,000	45,695,000	776,815,000
		1	504	652,878,450	266,021,550	918,900,000	91,890,000	45,945,000	781,065,000

※ 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상품입니다.

※ 총 분양금액은 면적,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금액은 각 세대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의 각 세대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셋째자리로 표기하였음. 이로 인해 사업계획승인의 합산면적과 분양면적의 합산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내벽의 안쪽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각 세대별로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면적은 사업승인면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본 건축물의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1항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1항1호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1항 별표3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 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공동주택 입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호수별 계약면적에는 공동이용시설 면적(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복도 등),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공동이용시설 면적(주차 관제실, 방재실 등) 및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실별 전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하여 배분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상기 면적에 대한 금액이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위치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로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였고,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와 대지, 건축물, 조경, 공지, 건축·기계·전기·설비 등을 공유함에 따라 생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전 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상호정산 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당 사업부지 인근 부지의 개발 및 단지 배치, 구조 및 층,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하며, 이로 인 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서와 기타 홍보자료가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02.08. 2019.08.20.시행)
- 분양대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5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세부 사항은 분양홍보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4-6번지 1층)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은 2021년 07월 건축허가도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2. 6. 7.)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이며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은 군별 1인 1건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동일군에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함.)
- 당첨자 명단에 대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전화문의는 대화 착오가능성 등으로 인해 응답 및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자와 청약 신청금 입금인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금은 100% 환불됩니다. (단, 청약시 제출하신 환불계좌가 다르거나, 거래정지 등 환불이 불가할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사오니 반드시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확인은 시행위탁사 분양홍보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청약금 오류 입금 시 상기 청약금 환불일 이후에 환불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중히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시	2022년 06월 17일(금)	2022년 06월 22일(수) 16:00 이후	2022년 06월 23일(목) (10:00 ~ 17:00 까지)
방법	인터넷 청약(09:00~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청약 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로그인후개별조회가능)	건본주택 방문 계약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엘루크 방배 분양홍보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4-6번지, 엘루크 방배 분양홍보관)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KB국민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분	구비서류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청약신청→‘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청약신청하기 ② 청약:인증서로그인→ 주택명 및 군선택→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군 공통	₩ 3,000,000 (금삼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 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 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KB국민은행 전 지점)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서(KB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 신청금 • 청약 신청금 환불받을 통장사본(청약 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법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KB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1통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p>※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p>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KB국민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준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건본주택에서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로 처리되니

신청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 타입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분양광고일(2022.06.0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2년 06월 22일 수요일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추첨 및 안내 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타입·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방법
환불 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은 은행 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이후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청약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관계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신청 계좌오류 등 송금불능사유 발생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II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청약 당첨자 계약기간 : 2022. 6. 23(목요일) 10:00 ~ 17:00
- 계약체결 장소 : 엘루크방배 분양홍보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4-6번지 1층)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공급)금액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의 분양(공급)금액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KB국민은행	[008601-04-173901]	(주)무궁화신탁 외 1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분양계약서 지정일 또는 잔금은 별도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동·호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예시. 401호 홍길동의 경우, "0401홍길동"이라고 기재) 만일 타인명의 등으로 입금하여 납부주체가 불분명하여 납부금액이 확인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 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입금도 분양대금의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 분양홍보관 및 본사에서 현금으로 분양대금 수납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이를 지체하여 납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입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상기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무궁화 신탁(주) 명의로는 일체 발행하지 않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계약체결 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계약용) 및 인감도장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 신분증(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통) 5. 계약금 납입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법인 신청시	1. 청약신청서 접수(영수)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및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4.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5. 계약금 납입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위임용) 1통 2.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분양홍보관에 비치함) 3.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구비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계약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 분양권의 전매 및 권리양도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단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를(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제64의 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분양 홍보관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조정, 분양가격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시행위탁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세부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계약자는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전 지정된 날에 사전방문하여 공사상태를 점검 및 하자보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전점검일은 추후 통보 예정임.)
- 계약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예정일 안내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정확한 입주일자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로 통보 드립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문화재 발견, 민원, 주요질병(코로나 19등) 발생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실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동파, 결로, 분실,도난, 파손 등)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 입주지정 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2 1항에 따라 사용승인 전 분양받은 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드립니다.

■ 공통 유의사항

1.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3.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4. 현장여건 또는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건축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면적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5.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실내·외, 공용부분 시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행위탁자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시행위탁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각 실의 타입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타입별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묻지 않기로 합니다.
7.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기타 입실 시 고지된 입실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분양홍보관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옥상조경포함),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건축허가 (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9.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표현 및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바라며,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0.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11.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등)는 사업관계자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시 유의 바랍니다.
12.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14.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5. 입실자 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16.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특성상 층간, 실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묻지 않기로 합니다.
18. 모집공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동일 타입내에서 최저 혹은 최고 분양가격을 의미이며, 계약하는 호실에 따라 분양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9. 잔금납부 전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60일내 법규정을 준수하시어 시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2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여 결정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2. 본 모집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23. 본 사업과 관련한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4.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 형별면적(㎡)÷ 3.3058]
25.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사업주체에 귀속합니다.
26.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실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7.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8.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9. 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0.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당 사업지 인근의 개발 및 단지 배치, 구조 및 층,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1.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시행위탁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포함)통보하시기 바라며, 통보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자의 손실부분은 시행위탁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32. 사업주체가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 등은 분양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헨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관리 및 조경(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실 후 상업시설 입점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4. 본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로고 및 사업주체의 브랜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합니다.(개정 2017.2.8., 2019.8.20)
36. 판매시설의 설계도면, 주요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도면 등에 표시된 상가 및 주변 현황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7. 외부창호, 프레임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8. 외부창호는 분양가 포함이며,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시험, 추후 본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 결과 및 입실인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재질,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9.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비, 대지비는 총 사업비에서 배분했으며 대지지분이동일하더라도 대지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40.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은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호실의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 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1.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에 의거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설계가 되어있습니다.
42.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에 의거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기준 내진등급 7등급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43. 외국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함
44.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45. 입주(입점)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능함
46.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전기 인입과 관련하여 지중화 변압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됩니다.
47.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일부 세대의 경우, 유사 시(화재)를 대비하여 대피에 용이한 파괴하기 쉬운 구조로 칸막이 시공이 되어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숙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8.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단위 호실 및 마감재

1.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마감자재 리스트상의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며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3.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입실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의거 적용합니다.

5. 계약자(이후“계약자”라 함은“입주자”를 포함하여 지칭함)는 분양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결정한 선택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자재 매입 및 공사일정과 관련하여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6.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일부실은 실내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마감자재 테스트 부착 등의 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실의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8.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 외부창호, 프레임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외부창호는 분양가 포함이며,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시험, 추후 본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재질,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13. 계약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감도, 실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난방은 바닥난방이고 냉방은 천정형에어컨이며(발코니 확장시), 폐열회수장치는 추후 설립될 수 있는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에어컨과 폐열회수장치의 모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15.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 및 기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상기 공급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수리된 분양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 및 책정한 금액이므로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16. 실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홍보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7.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8.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19. 실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신발장,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 하부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수전, 우오수 선홍통, 드레인, 배수구 등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창호 개폐방향 및 사양은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의 경우 분양홍보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실제 시공된 제품의 색상 및 무늬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목자재의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자재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21. 본 공사 시 현관 옆 벽면에 실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22.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가전류(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임.
23. 공사 시 각실 욕실의 타일 코너면에는 전용 타일 비드가 설치됨.
24.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25.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6.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각 타입별 선택사항에 따라 마감 및 가구설치 모양이 달라지며, 계약시 선택한 사항에 대한 추후 변경이 불가함. (분양홍보관 참조)

27. 분양홍보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환기구(급/배기용)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양홍보관 가시시설 또는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 환기시설로 본공사시 인허가된 설계도면에 기준하여 시공하게 되므로 위치와 사양 등이 분양홍보관의 경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실내 천정형 냉,난방기는 분양홍보관 자체의 냉,난방설비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28. 각 실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29.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분양카달로그 및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30. 저층실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31. 저층 석재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창호크기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2.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33. 실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34. 실시공시 실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35.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6.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 및 사양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37. 모델하우스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시 KS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8.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 및 등기구 등은 건물의 친환경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동등 이상의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IV.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유상 옵션)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원)

타입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15%)	잔금 (입주시,85%)	비고
A	18,000,000	2,700,000	15,300,000	
B	18,000,000	2,700,000	15,300,000	
C	18,000,000	2,700,000	15,300,000	
D	12,000,000	1,800,000	10,200,000	
C1	18,000,000	2,700,000	15,300,000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발코니 확장 공사는 공동주택의 시공과 동시에 시공되어 최초입주지정기일 내에 시공이 완료되는 품목으로 일정 공정이 진행된 이후에는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사오니 이점 유의하기 바라며 선택 가능 여부는 개별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2일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중도금대출 신청시 대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 세대) 선택시 가구, 디자인,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해지 시 공급대금(VAT포함)의 계약금(공급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게 귀속되며, 1차 중도금 지급시점 이후에는 중도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확장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선택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하였어도, 시스템 에어컨 관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매립 냉매배관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 (및 바닥)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 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 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개별 시공함에 있어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타입”별로 다소의 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타입”별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세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벽체 및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일부 벽체 및 천장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에어컨

타입	제조사	설치개수	설치 위치	금액	계약금 (계약시, 15%)	잔금 (입주시, 85%)	모델명	비고
A	삼성	4	거실3, 침실1	5,500,000	825,000	4,675,000	실내기 AJ020MB1PBC1 AJ016MB1PBC2	
B		4	거실3, 침실1	5,500,000	825,000	4,675,000		
C		4	거실3, 침실1	5,500,000	825,000	4,675,000		
D		3	거실2, 침실1	4,100,000	615,000	3,485,000	실외기 AJ040MXHNBC1	
C1		6	거실4, 침실2	5,500,000	825,000	4,675,0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 개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금액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옵션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타사 제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 및 타입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동주택 계약과 동일한 연체료율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을 납입한 이후에도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단,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대금(VAT포함)의 계약금(공급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해제되어 자재의 제작, 설치, 철거 등이 발생할 경우 기 납부 한 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른 용량에 맞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용 실외기는 옥상, 테라스 등에 설치되어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매립 냉매배관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 연결 및 가동 불가,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 타입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등 위치간섭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옵션 설치시 냉매배관의 콘센트 미설치 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비용은 중도금대출 신청시 대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본 시공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또는 실외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옵션 설치로 인하여 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실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벽체를 변경하여 실면적이 증가할 경우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추후 추가로 실내기만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가 제외되며, 모든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판매가는 해당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타입”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옥상 테라스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테라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KB국민은행	008637-04-004200	(주)무궁화신탁	
잔 금	KB국민은행	008637-04-004200	(주)무궁화신탁	

- 발코니 확장 옵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1호 홍길동→발1011홍길동)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료가 발생하오니, 계약자는 필히 납부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은 공급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 기타 주요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함.

■ 부대복리시설 : 북카페, 체력단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VAT별도)	사업장 소재지
건축	수 건축사사무소	214,2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송곡개로 126-1
전기/정보통신	주식회사 현이엔지	14,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7, 제B동 319호(고잔동, 남동공단산업용품상가)
소방	주식회사 이곳이엔씨	18,000,000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2번안길 8, 405호(원창동, 북항프라자)
구조	주식회사 에스큐브이엔지	10,5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6(논현동, SH빌딩) 5층 503호
기계설비	주식회사 비상이엔씨	10,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29, 2층(도림동)
토목	주식회사 정토이엔씨	17,6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68(송파동, 유남빌딩) 302호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보증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1-101-0014000호	일백이십일억칠천삼백이십이만원 (₩12,173,22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공사 진행정보 제공: 분양보증을받은아파트사업장의공사진행정보는주택도시보증공사의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관리형태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시설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제이앤유개발, (주)조이컨설팅, (주)비와이디산업개발과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시공사 더효종합건설(주)간 체결한 관리형태지신탁(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의거 시행 및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주)무궁화신탁은 분양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의하여 (주)무궁화신탁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을 말하며)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제이앤유개발, (주)조이컨설팅, (주)비와이디산업개발이 부담하며, (주)무궁화신탁은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함을 계약자는 인지합니다.
 - 계약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에게 있음을 인지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브랜드,명칭 변경포함) 교체시 계약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본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주)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수탁자(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본 사업 시행주체(시행사)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 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주)제이앤유개발, (주)조이컨설팅, (주)비와이디산업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매도인)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제이앤유개발, (주)조이컨설팅, (주)비와이디산업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분양대행사 : (주)슬렉스마케팅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사업시행방식 : 관리형태지신탁

등록업자 : (주)무궁화신탁

- 등록번호 : 110111-2867418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서초구청 건축과[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사업계획승인 (변경)완료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분양대행사, 자금관리

구분	업체명	주소	법인 등록번호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제이앤유개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1, 5층 5090호(용강동)	110111-6927424	
	(주)조이컨설팅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1, 5층 5091호(용강동)	110111-6926814	
	(주)비와이디산업개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5길 43, 201호(화곡동)	110111-6396356	
시공사	더효종합건설(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5길 43, 401호(화곡동)	110111-6152758	
분양대행사	도시형 생활주택	(주)슬랙스마케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9, 6층(자양동, Y타워)	110111-2973710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10111-2867418	

■분양홍보관 위치 및 분양문의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4-6번지 1층

- 분양문의 : 02-3448-0208

홈페이지 : llewk-bangbaeseoripul.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